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70호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산업통상부장관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외무역법 제4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에 따라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차보전 지원대상(안 제3조)

나. 이차보전 한도, 기간 및 사업공고 등(안 제4조~8조)

다. 실수요자 결정 및 실수요자 의무(안 제9조~제16조)

라. 금융기관 대출 및 이차보전액 지급·정산 절차 등(안 제17조~제21조)

마.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및 환수(안 제22조)

바.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등(안 제23조~제2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앞

- 전화 : 044-203-4696

- 팩스 : 044-203-4717

- 이메일 : jihwon@korea.kr